

의안번호	2211227
의 퇴 인	박홍배 의원
회 답 일	2025.8.4.
추 계 번 호	25B3545

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하고,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,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억 5,900만원, 2031년 1억 1,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6억 7,100만원(연평균 1억 3,4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42	—	—	42	—	84	17
실태조사 및 연구(안 제8조)	107	107	107	107	107	535	107
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(안 제11조)	10.4	10.4	10.4	10.4	10.4	52	10
합 계	159	117	117	159	117	671	134

주: 1.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2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기본이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, 사업주, 노무제공자 및 국민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및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법적, 제도적, 행정적,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5조(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 수립)	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6조(시행계획 및 평가)	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.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8조(실태조사 및 연구)	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9조(연구개발 촉진)	고용노동부장관은 야간근로,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 1. 야간근로, 장시간 노동 등 과로사 발생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2. 직무스트레스 평가,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과로사 예방을 위한 진단 및 평가 도구 개발 3. 과로사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관리기법 개발 4.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추진 등	재량규정
7	안 제10조(교육·홍보 및 상담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활동을 실시하고, 필요시 공공기관 또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	의무·재량규정
8	안 제11조(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)	과로사등 방지대책의 조정과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를 둬.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,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, 노사단체 추천자, 과로사 예방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	의무규정
9	안 제12조(사업주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제도개선을 한 사업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3조(민간단체 활동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등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·2	안 제3조(기본이념) 안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—	• 미대상 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
3	안 제5조(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 수립)	○	• 공식추계 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
4	안 제6조(시행계획 및 평가)	×	• 미첨부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—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—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·도지사로부터 하역금 제정안 제5조에 규정된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—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해당 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·도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		—	• 미대상(시행계획의 실적 평가 및 국회 보고) —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5	안 제8조(실태조사 및 연구)	○	• 공식추계 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
6	안 제9조(연구개발 촉진)	—	• 미대상 — 제정안은 야간근로, 장시간 노동 등 과로사 발생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등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제정안 제8조(실태조사 및 연구)를 토대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1) 코드: 4154-350의 내역사업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7	안 제10조(교육·홍보 및 상담 지원)	×	• 미첨부(교육·홍보)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2025년 고용노동부는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방송·언론매체 등을 통해 산재예방 알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안전보건문화정착¹⁾ 사업에 85억원(2025년 기준)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– 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교육·홍보 업무는 고용노동부 기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, 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 여부 및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 –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
		×	• 미첨부(상담서비스)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시 공공기관 또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–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고위험군의 ‘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’²⁾를 위해 38억원(2025년 기준)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–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행 사업의 확대 규모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 여부 및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 –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
8	안 제11조(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)	○	• 공식추계 –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

2) 코드: 4152-353의 내역사업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9	안 제12조(사업주 지원)	×	• 미첨부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제도개선을 한 사업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–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업주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
10	안 제13조(민간단체 활동 지원)	×	• 미첨부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로사등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–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민간단체 활동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)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(4,200만원)을 준용하여 추계

[표 2]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 수립	42	—	—	42	—	84

주: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나. 실태조사 및 연구(안 제8조)

-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하며, 조사·연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(4,200만원)을 준용하여 추계
 - (유사사례 1)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
 - (용역예산) 4,000만원(2023년)
 - (주요내용)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·보건관리 실태조사³⁾
 - (수행기관) 한국안전학회
 - (유사사례 2)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방안 연구
 - (용역예산) 9,000만원(2025년)
 - (주요내용) 감정노동 취약 직종 및 업종 등에 대한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

3)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- 8호

- 장이행 상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 업종 및 직종별 개선 방안 마련
 - (수행기관)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⁴⁾

[표 3]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실태조사	65	65	65	65	65	325
조사·연구	42	42	42	42	42	210
합계	107	107	107	107	107	535

주: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다.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(안 제11조)

- 제정안은 과로사등 방지대책의 조정과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(구성) 제정안은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의 규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움
 -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는 총 16개가 있으며, 본 추계서는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'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'를 토대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참석 사례금(안전 검토비 등 포함)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,⁵⁾ 회의 개최 횟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4) 자료: 나라장터

5) 기획재정부의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
 -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 내로 편성
 -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·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[표 4]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에 따른 비용추계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민간위원 수(A, 명)	13	13	13	13	13	—
회의개최 횟수(B, 회)	4	4	4	4	4	—
회의참석 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20	20	20	20	20	—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10.4	10.4	10.4	10.4	10.4	52

주: 1.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2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하고,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,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6억 7,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42	—	—	42	—	84	17
실태조사 및 연구(안 제8조)	107	107	107	107	107	535	107
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(안 제11조)	10.4	10.4	10.4	10.4	10.4	52	10
합 계	159	117	117	159	117	671	134

주: 1.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2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